

1. 개정이유

「중소기업 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였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·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(2022. 2. 00)됨에 따라 기존 조항의 ‘중소기업중앙회장’을 ‘수탁기관의 장’으로 변경하여 명기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‘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’ 또는 ‘중앙회장’을 ‘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’ 또는 ‘수탁기관의 장’으로 변경(안 제5조제2항·3항, 제6조제1항·2항, 제7조제1항·2항, 제8조제1항)

나. 기존 인용 조문을 개정된 조문에 맞추어 현행화(안 제9조의2 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(이하 “중앙회장”)을 “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(이하 “수탁기관의 장”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앙회장”을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앙회장”을 각각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앙회장”을 각각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중앙회장”을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 중 “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3”을 “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)	제5조(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(이하 “중앙회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(토요일과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.	②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(이하 “수탁기관”의 장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	③ 수탁기관의 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	제6조(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

신청의 절차 등)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 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)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앙회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

신청의 절차 등) ① -----

--- 수탁기관의 장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수탁기관의 장-----

-----.

제7조(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) ① -----

--- 수탁기관의 장-----
-----.

② -----

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<u>중앙회</u> <u>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2. (생 략) 제8조(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) ① <u>중앙회장</u>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, 취소 사유, 취소 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써 한다. ② (생 략) 제9조의2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) 영 제13조제4호 중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「<u>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규칙</u>」 제3조 <u>의3</u>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.	----- <u>수탁기</u> <u>관의 장</u>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제8조(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) ① <u>수탁기관의 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9조의2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「<u>소프트웨어</u> <u>진흥법 시행규칙</u>」 제5조제1항 -----.
---	--